

'08년 정책과제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200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목 차 > —

- I. 과제의 배경 및 목적 / 1
- II. 공공 디자인의 개념 및 의의 / 3
- III.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실태분석 / 11
- IV. 중앙정부 공공디자인 실태분석 / 30
- V. 외국의 공공디자인 추진실태 / 39
- VI.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 43

I. 과제의 배경 및 목적

1. 과제의 배경

- 개발연대를 지나 어느 정도 국가성장을 달성하게 되자 삶의 질이나 품격을 중시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양적 성장의 개발연대를 지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브랜드 가치향상, 창조도시 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공 디자인 촉진 등 삶의 질과 품격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와 문화 등 부문은 물론이고, 공공과 민간 등의 주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질적 성장이나 삶의 환경 전반에 대해서 품격을 향상 시키려는 움직임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 관련 사업들임
 - 서울,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포항, 부천, 진안 등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공공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공공 디자인 촉진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별로 이와관련된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음
 - 행안부는 행정관리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등 공공 디자인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등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자치단체가 공공 디자인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중앙차원에서는 제도적 기반의 미비는 물론이고 부처간의 공공 디자인 추진에 대한 역할구분이 불명확
-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공 디자인의 추진경험의 부족, 제도지원 미비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2. 과제의 목적

-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법제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임
- 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 추진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중앙부처의 공공 디자인 추진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 부처별 사업내용, 주장, 추진기구, 법적기반 등
 - 부처별로 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 추진사업을 난립적, 경쟁적으로 추진, 지원을 넘어 자치단체가 공공 디자인 추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디자인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II. 공공 디자인의 개념 및 의의

1. 공공 디자인의 개념

○ 기존의 정의

-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울만큼 다양한 시각이 존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은 “도시공간에서 수행되는 공적인 디자인으로, 공적 영역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통합적 디자인 활동, 사적인 영역일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갖는 디자인 활동”으로 정의
- 서울시(2008)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

※ 공공디자인을 공공의 장소인 도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 문화부(2008)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사용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로 정의
- 윤종영(2008)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공공 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적 가치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선진문화창출에 기여하는 포괄적 행위”로 정의
- 홍석일(2007)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공공 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결과물”로 정의

표 1. 선행의 공공 디자인 개념

구 분	정 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 도시공간에서 수행되는 공적인 디자인으로, 공적 영역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통합적 디자인 활동, 사적인 영역일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갖는 디자인 활동
서울시(2008)	-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문화부(200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사용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의 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조적 행위
윤중영(2008)	-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공공 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적 가치를 제고 시킴과 동시에 선진문화창출에 기여하는 포괄적 행위
홍석일(2007)	-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공공 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결과물

○ 본 과제의 정의

- 공공기관이 조성,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 시설 등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
- 실천적 관점에서는, 공공이 제공하거나 민간이 제공하지만 공공성을

지닌,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공공성을 띤 도시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향상된 이미지 창출을 위한 공공장소의 다양한 공간적 장치와 형태를 꾸미는 작업 혹은 그 결과물로 이해 가능

. 대상과 범위 : 주민들의 피부와 와 닿는 공간정비에 초점을 둔 옥외광고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2. 공공 디자인의 의의

○ 미적이고 유쾌함을 주는 요소

- 공공 디자인은 특정한 도시나 지역의 미적인 아름다움에 의한 유쾌함을 주는 기능을 수행
-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높을 경우, 지역의 인상이나 이미지를 향상시킴
- 동시에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 매력을 증가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착, 귀속의식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

○ 지역의 경쟁력 및 경제적 향상 요소

- 공공디자인이 환경가치를 넘어 경제가치를 지니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어메니티 등이 뛰어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고, 골드칼라나 첨단산업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
- 아울러 공공 디자인이 도시경쟁력이나 지역의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경제적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

< 공공 디자인과 지역 경쟁력의 관계 >

- 영국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와 지역경제전략센터(The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는, 지역의 공공환경 향상은 경제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¹⁾
-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파크 산업지역, 체서의 윈포드 산업지역 등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한 조경과 조명, 안전 조치가 사례 연구 지역 4곳의 상점가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공공디자인이 일자리 창출과 고객 방문 빈도 증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지역경제전략센터는, 공공디자인 향상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민간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

3. 공공 디자인의 특징

○ 주체 및 목적

-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디자인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측면이 강함

○ 공공 디자인의 구성

- 공간 디자인의 구성은 정형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이 가능
- 공공 디자인은 건축, 조경, 옥외광고물, 교통표지판, 도시시설물, 심지어 방호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
- 공간, 건축물, 공공시설 등을 포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장소

1) www.planningresource.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c6ca63e8-0ce5-499c-aa0f-1382714f9479&e=1

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 등

-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적 시설, 도로시설(사람을 위한 시설, 자동차를 위한 시설)로도 요소 파악이 가능

표 2. 환경적 시설 및 도로시설 측면의 구성요소

환경적 시설	도로시설	
건축물, 도로, 운하, 공원, 산책로등	사람을 위한 시설물	광고, 게시판, 교통표지, 신문광고, 벤치, 버스, 택시정류장, 지하철입구,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가로등, 쓰레기통, 재떨이, 자동판매기, 우체통, 화분, 가로수등
	자동차를 위한 시설물	신호등, 교통표지, 파킹미터, 가드레일, 교통관제탑등

○ 공공 디자인의 범위

- 광의의 공공디자인은 공공이 제공하는 공적영역과 민간이 제공하는 사적영역이지만 공공적 효과에 기여하는 환경 디자인까지를 포함
- 협의의 공공디자인은 공급주체가 공공인 것으로 한정

그림 1. 공공 디자인의 범위



○ 공공 디자인의 대상

- 건축물 및 건축물의 외관,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으로 다양

표 3. 건축물 외관 디자인

분 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 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 포함) 다.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바.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표 4.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시설 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표 5.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문화관광 시 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라. 동상·기념비 등
가로녹지 시 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환경관리 시 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 시 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지하철 시 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 설물	가.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이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공 디자인의 유형

- 정형화된 유형이 없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화 가능
- 공급주체 : 공공 디자인, 민간 디자인
- 부문별 : 산업디자인, 건축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경관 디자인 등
- 이익별 : 공익을 위한 디자인, 사익을 위한 디자인

○ 공공 디자인의 범주

- 원칙적으로 디자인의 공익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해서 공공과 연관된 디자인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 가능

표 6. 가로시설물

영역	주요 대상	비고
공공시설	- 가로등, 간판, 표지판, 설치물, 거리포장, 육교, 벤치 등	street furniture
공공공간	- 길, 광장, 공원, 정원, 놀이터, 시장 등	공익적 용도의 장소
공공건물	- 관공서, 학교, 도서관, 병원, 박물관, 미술관, 역사, 공항, 부두 등	공익을 제공하는 건물

Ⅲ.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실태분석

1. 개략적 수준

- 우리나라 도시나 지역의 공공 디자인 매력도 및 아름다움은 열악
 - Anhofl(2006)의 아름다운 도시평가나, Forbes(2008)의 매력적인 도시 평가에서 한국의 대표적 도시인 서울은 하위 수준
 - 서울은 세계 60개 도시 중 경관매력 54위, 브랜드 가치 4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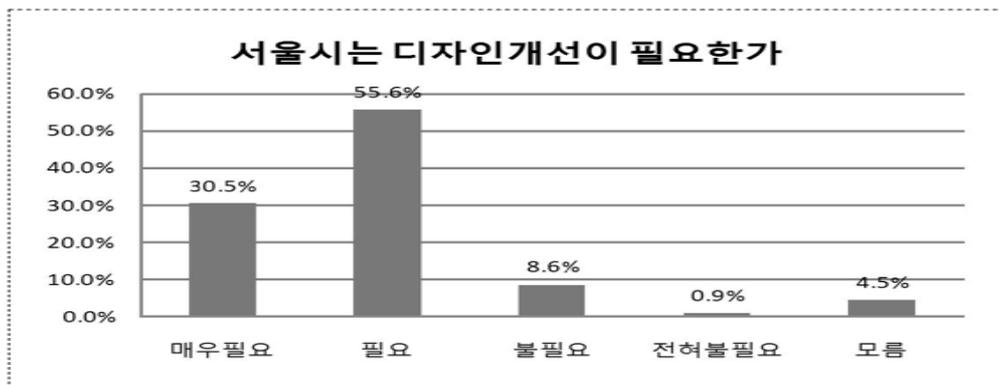
표 7. 서울의 매력도 순위

City Brand (2006, Anholt)	Beauty Parade (2006, Anholt)	Stylish City (2008, Forbes)
1. 시드니 6. 워싱턴DC 2. 런던 7. 샌프란시스코 3. 파리 8. 멜버른 4. 로마 9. 바르셀로나 5. 뉴욕 10. 제네바	1. 파리 6. 마드리드 2. 로마 7. 상트페테르부르크 3. 시드니 8. 암스테르담 4. 런던 9. 프라하 5. 바르셀로나 10. 샌프란시스코	1. 런던 6. 바르셀로나 2. 파리 7. 멜버른 3. 시드니 8. 베를린 4. 뉴욕 9. 암스테르담 5. 로마 10. 마드리드
44. 서울	54. 서울	

자료: www.citybrandindex.com; www.forbes.com.

-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 디자인 사업추진에 대해 많은 시민(86.1%)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그림 2. 공공 디자인 수요



2. 추진현황

1) 가로시설물 관련 추진 현황²⁾

- 가로 시설물은 공공 디자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한국의 자치단체 수준에서 가로시설물 관련 행정은 다기화되어 있음
 - 아울러 가로시설물 전체를 전담하는 중앙부처도 정해져 있지 않음
- 현재 한국에는 가로시설물 전체를 전담하는 중앙부처는 없으며,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가로시설물 관련 행정은 다기화되어 있음
 -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행정부서나 KT나 한전과 같은 민영기관의 설치자가 각각의 시설별로 담당하고 있음(표 7)
- 가로시설물의 설치는 크게 공공기관과 민영기관의 설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 당국이나 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담당 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설치업체를 선정 후 시행
 - KT나 한전과 같은 민영기관의 경우 가로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담당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득하여 해당 가로시설물 설치업체에 용역을 주어 설치
- 운영 및 관리 역시 전체적인 지침이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가로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는 일반적으로 각 담당 기관 담당자들의 순찰과 파손이나 변형에 관한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

2) 여기서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로시설물의 추진현황 살펴보고 있다. 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 추진 현황은 실로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어 실제로는 그 전체를 다루어야 하나, 타 부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하나의 측면을 통해 이와 대동소이한 공공 디자인 전체의 추진현황을 유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표 8. 가로시설물의 설치자, 사후관리자, 디자인 규정 근거

가로시설물	설치자	사후관리자	디자인 규정 근거
도로표지판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1
버스승강장	운송사업자, 광고주	운송사업자, 광고주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에 관한 규정
택시승강장	시장	시장	근거없음
전화부스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통신공사	근거없음
우체통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우체국장	내규
휴지통	구청장	구청장	근거없음
주변지역 안내판	시장	광고주	근거없음
파골라	구청장	구청장	근거없음
간이 의자 탁자	시설주	시설주	근거없음
환경조각	건축물 인허가서 권장사항	시설주	근거없음
자판기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설치자	근거없음
신문함 구두수선	시설주	설치자	근거없음
승차권 판매소	시설주	설치자	근거없음
서적가판대	시설주	설치자	근거없음
배전함	전기사업법 제29조, 도로법 제40조	한전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소화전	소방본부장의 동의, 소방법 제8조	소방본부장	소방법시행규칙 제43조~제47조
전봇대	시장허가	한전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70조
지하 환기구	건축물의 부대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	도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 지하도로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2) 가로시설물 관련 행정시스템의 문제점

□ 통합적 주체의 부재

- 가로시설물의 설치, 운영,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행정체계의 부재
 - 이로 인해 도시 가로시설물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방침없이 각각의 시설 주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
- 이는 가로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이며 조화로운 디자인이 실현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
 - 기능에 있어서도 각각의 시설물들의 기능간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고 남용되고 있음

□ 체계화된 시스템 부재

- 통합적인 추진주체가 부재한데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들이 존재하지 않아 각 시설물은 각각의 관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
- 각각의 시설물들이 제 각각의 주체에 의해 운영·관리되어 전체적인 가로환경에 있어서 가로시설물간의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가 불가능

□ 시설별 및 지역별 디자인 편차

- 시설별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주체의 차이는 불가피하게 공공 디자인에 있어서 부조화와 시설 및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킴
- 통합적인 주체(예: 공공디자인 전담팀)에 의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시설별·지역별 편차의

관리는 곤란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설치하는 각종 안내판이나 벤치,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변경, 교체 등이 가능하지만 민간 기관 혹은 개인이 허가를 얻어 설치한 자판기, 판매대, 공중전화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교체를 강요할 수 없음
- 따라서 가로시설물의 설치, 운영, 관리의 시설물별 편차 및 지역적 편차를 줄여 공공 디자인의 조화 및 품격을 향상시켜야 할 개선의 과제가 발생
- 이 경우, 디자인의 통일성 및 조화에 의한 품격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광고물처럼 시민생활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는 점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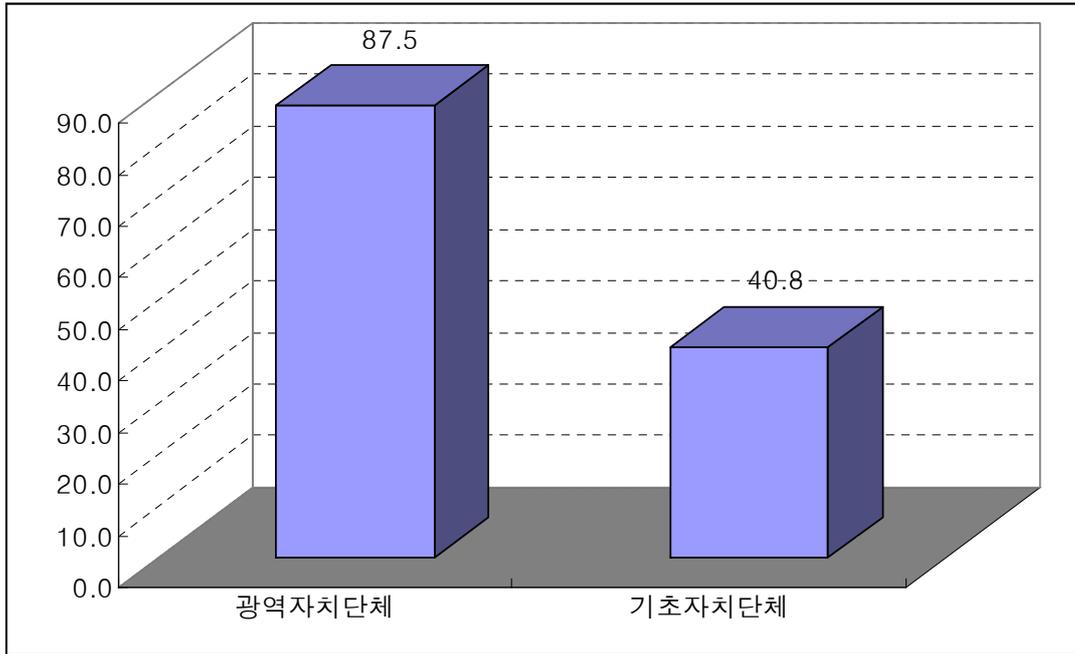
3.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실태분석

1) 제도실태

(1) 전담조직

- 최근 들어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 2008년 10월 현재, 공공 디자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의 87.5%인 14개, 기초자치단체의 40.8%인 86개 지역이 해당됨

그림 3.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설치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별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과 경북을 제외하고는 14개 시도가 계 이상의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디자인업무를 총괄 또는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계약직)한 경우는 8개 시도 총 33명으로 파악됨

표 9.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 및 인력

구분	관련 조직		전문인력 (계약직/명)
	전담조직(계이상)	개별 담당자	
서울	디자인서울총괄본부		17
부산	도시경관기획단 (경관정책계/ 경관조정계/ 공공디자인계 디자인지원계)		1
대구	도시디자인팀 (도시디자인담당/ 도시경관담당/ 공공디자인담당)		-
인천	-	1명	2
광주	도시디자인과 (1과4계)		-
대전	도시디자인과 (1과4계)		3
울산	도시국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계		1
경기	기획조정실 디자인총괄추진단 (디자인기획계/ 도시경관계/ 디자인지원계)		7
강원	디자인정책계		-
충북	균형발전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도시경관팀/ 주택관리팀)		-
충남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1
전북	지역개발과 (도시디자인담당)		-
전남	관광문화국 공공디자인과 (경관관리담당/ 공간시설담당)		1
경북	-	1명	-
경남	도시교통국 혁신도시주택과 (도시디자인담당)		-
제주	1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 관련부서나 담당자를 두고 있는 곳까지를 파악하면 조사대상 자치단체 211개(제주도 행정시 포함) 중 171개로서 81%에 달함

- 전담조직을 구성한 경우는 대부분 도시계획(또는 주택/건설)국 산하 도시디자인과(또는 실/계/팀)에서 공공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산업디자인팀(삼척), 경관관리팀(홍천), 문화관광과(전남 고흥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함

표 10.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 관련 조직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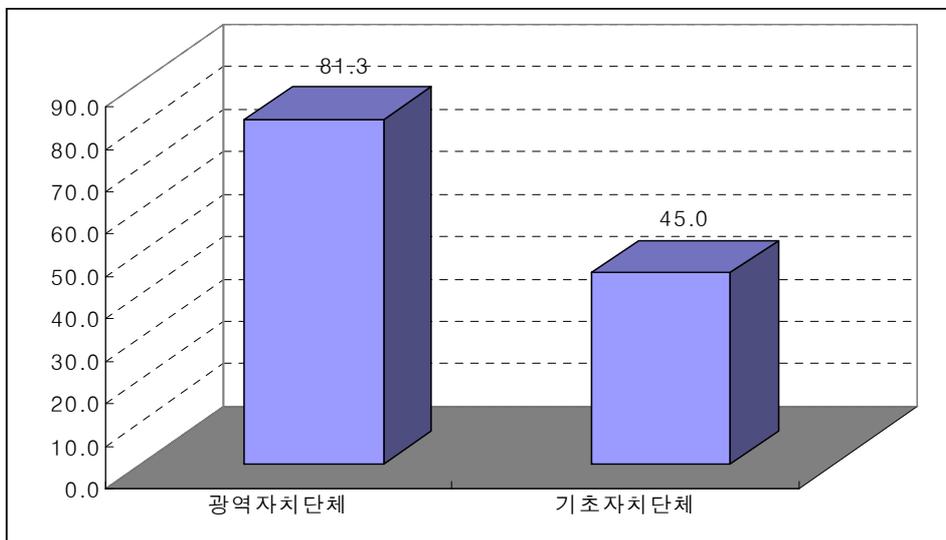
구분	전담조직				전문 인력	비고 (미응답 시군구 수)
	전담 조직	개별 담당자	해당 없음	설치 예정		
서울(20)	18	0	1	1	13개구 17명	5
부산(16)	4	9	2	1	0	
대구(8)	2	2	4	0	2개구/2명	
인천(10)	1	6	3	0	1개구/3명	
광주(5)	1	4	0	0	0	
대전(5)	1	1	3	0	1개구/1명	
울산(5)	5	0	0	0	2개구/2명	
경기도(31)	17	7	7	0	15시군/23명	
강원(18)	8	9	0	1	5개시군/7명	
충북(12)	1	9	1	1	0	
충남(16)	5	0	10	1	2개시군/4명	
전북(14)	3	2	9	0	4개시군/6명	
전남(22)	6	16	0	0	1개시군/1명	
경북(7)	5	2	0	0	1개시군/1명	16
경남(20)	7	13	0	0	3개시군/4명	
제주(2)	2	0	0	0	0	
시군구 소계 (211)	86	80	40	5	50개 시군구 / 71명	21

- 총 50개 시군구에서 약 71명의 전담 인력을 공공 디자인 업무에 활용, 공공 디자인 총괄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조례 제정

- 2008년 10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81.3%인 13개, 기초자치단체의 45.0%인 95가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할 예정임

그림 4.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및 제정예정율



-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비교적 근래에 조례를 제정한 서울, 부산, 광주 등은 도시 디자인 또는 공공 디자인 조례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인천, 강원, 전남 등은 경관 조례로서 공공디자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이 신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공공 디자인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드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경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법 체

계가 불명확하여 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 추진 등에서도 다소 혼란을 겪고 있음

- 특히 자치단체의 각종 규정과 계획 또한 제도적 틀과 연동되지 못하여 실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표 11.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제정	제정예정	미제정
서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06.7.19)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08.3.5)		
대구			미제정
인천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03.12.29)		
광주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2008.1.1)		
대전			미제정
울산		울산광역시경관조례 ('08. 10)	
경기		'08.12월내 제정예정	
강원	강원도경관형성조례 (2000.6.22)		
충북		공공디자인조례 ('08. 11)	
충남		공공디자인조례 ('09.3)	
전북		- 디자인조례 (디자인기본법 제정시) - 경관조례, 옥외광고물조례 (2008.12)	
전남	전라남도 경관조례 (2006.5)		
경북			미제정
경남	경관조례 ('08.7.10.)		
제주		'08.11	

○ 2008년 10월 현재,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의 경우 대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지역의 경우 대부분 경관조례로서 관련 법규를 규정하고 있음

- 파주, 성남, 남원 등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음

표 12.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제정	제정예정	미제정	미응답 시군구수
서울(20)	2	10	8	5
부산(16)	1	10	5	
대구(8)	0	0	8	
인천(10)	0	0	10	
광주(5)	0	0	5	
대전(5)	0	2	3	
울산(5)	1	1	3	
경기도(31)	4	14	13	
강원(18)	18	0	0	
충북(12)	1	2	9	
충남(16)	1	2	13	
전북(14)	1	3	10	
전남(22)	13	1	8	
경북(7)	1	1	5	16
경남(20)	2	4	14	
제주(2)	0	0	2	
시군구 소계 (211)	45	50	116	21

2) 사례분석

(1) 서울시

□ 서울시 디자인 정책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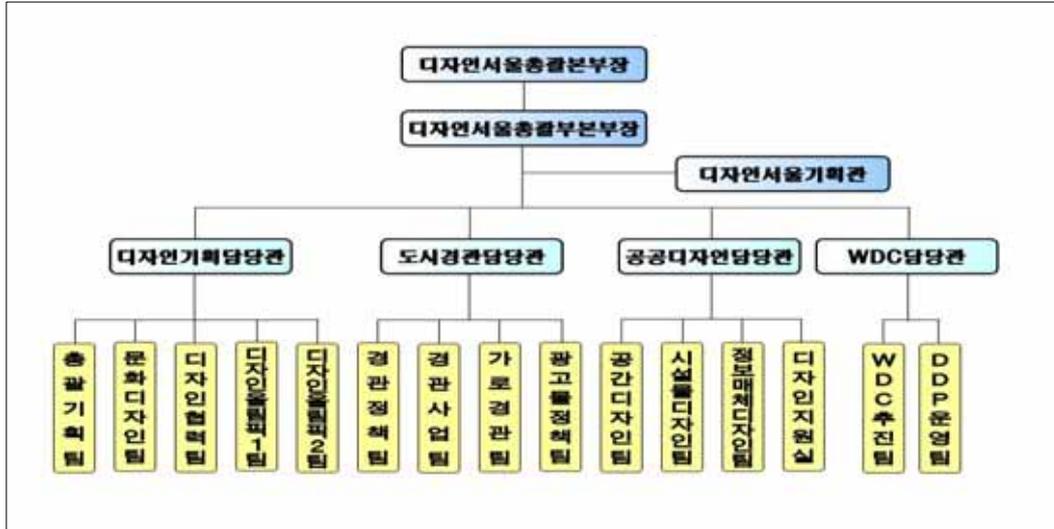
- 서울시는 그간의 건설과 산업 중심, 기능과 효율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우선시 되는 hard city에서 탈피,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soft city로의 변화를 목표로 한 ‘디자인 서울’의 비전을 제시
 - ‘Soft Seoul’이라는 디자인 서울의 비전 아래 서울의 도시경관, 디자인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산업디자인총연합(ICSID) 총회에서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World Design Capital)로 지정

□ 관련 조직 및 조례

① 관련조직

- 2007년 5월 11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발족, 2008년 현재 4개과 15개팀(96명)으로 구성

그림 5.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직도



-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 도시 디자인의 실행조직이자 관리조직으로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디자인 업무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
 - 본부내 세부조직은 디자인기획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 운영
 - . 디자인기획담당관 : 디자인을 총괄 기획
 - . 도시경관담당관 : 도시경관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
 - . 공공디자인담당관 : 공공시설물과 그 외 기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표 13.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인력 현황

구분	합계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이하	
정원	81	13	66	3	13	50	2
현원	96	13	73	3	13	57	10

② 관련조례

- 디자인 관례조례로 2003년 9월 광고물 정비 등 기성시가지의 가로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조례’를 제정,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 등을 추진
- 2006년 7월 1일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부문 경관사업의 심의를 위한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11월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경관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5월에 공포

□ 추진사업

- 2006년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7년부터 향후 4년간을 도입기, 확산기, 성숙기, 완성기의 단계로서 디자인 서울 4대 기본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 수립
 - 4대 기본전략
 - 비우는(Airy) 디자인 서울
 - 통합(Integrated)디자인 서울
 - 더불어(Collaborative) 디자인하는 서울
 - 지속가능한(Sustainable) 디자인 서울
 - 10대 과제: 디자인서울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제정,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 서울상징 개발, 광고물 수준향상,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경관관리 방안 수립,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계획,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디자인서울 행사기획 및 홍보
- 2008년에는 서울시경관계획 수립, 디자인서울거리, 가로시설물 통합 추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시

범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남산르네상스 추진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성과 및 한계

- 공공 디자인 관련 총괄부서의 수립으로 행정시스템 체계화
 - 2007년 조직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그 동안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던 공공 디자인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수행
 - 시정 전반에 적용할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임
- 표준디자인 매뉴얼의 집행 애로
 - 담당부서 설치 이후 시행한 사업의 결과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전담부서 설치로 인한 개선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개발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 등이 실제로 실행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노정됨
 - 자치단체 차원에서 유기적인 총괄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시설물 관련 설치 및 관련 주체는 여전히 다기화되어 있어,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집행시키는데 한계를 보임
 - 다양하게 수립된 표준디자인 매뉴얼이 실제로 활용되기 보다는 매뉴얼의 형태로 제시되는 데 그침
- 제도적 기반으로서 도시 디자인 조례의 한계
 - 서울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인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주로 도시환경디자인정책에 관한 사항과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로시설물에 대한 조항이나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법적인 효력이 미약하여 도시 디자인 조례로서 서울시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2) 안양시

□ 안양시 디자인 정책 및 방향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해 안양시는 2002년부터 ‘안양아트시티21’(Anyang Art City 21: AAC21) 프로젝트를 추진
 - 도시문제를 개선하여 수려한 경관과 미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출에 목표를 둠
- 안양아트시티21 프로젝트는 일본 구마모토의 아트폴리스를 벤치마킹한 것임
 -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의 외관, 형태 등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안양시를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는데 목표를 둠

□ 관련 조직 및 제도기반

① 관련조직

- AAC21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안양시는 먼저 AAC21 건축자문단을 설치·운영
 -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AAC21건축자문단에서는 건축물은 물론 모든 관의 발주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와 시공 전 설계에 관하여 자문을 시행하도록 함
 -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AAC21 건축자문단은 417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4,972건의 건축물과 각종 공공시설물 관련 설계 자문을 실행
- 2006년 4월 부시장 산하에 ‘예술도시기획단’을 구성하여 안양시 도

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게 함

- 2008년 12월 현재, 예술도시기획단에는 도시디자인팀, 광고물팀, 공공디자인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단장을 포함 총 11명의 인력이 도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07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도시예술화사업(Public Art Project) 전담법인인 ‘안양공공예술재단’을 설립
- 2006년 4월 부시장 산하에 ‘예술도시기획단’을 구성하여 안양시 도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게 함
-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
 - 안양시 중심가 5개 구간을 선정하여 Art Street 조성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도로시설물 예술화 작업

② 제도기반

-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조화로운 단독주택지 경관 형성, 주변녹지로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다양한 지붕선 도입 등을 포함
- 특별관리권역 디자인 가이드라인
 - 가로 중심축에서 조망의 정점부나 결절점에 위치하는 공간에 예술품 설치 등 규정
- 가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가로의 성격, 보도의 물리적 조건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배치, 통합 시설물 디자인을 통한 가로 이미지 통일 등을 포함
-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로의 위계에 따른 통일된 가로경관 형성, 질서가 느껴지는 가로경관 형성 등을 포함

□ 추진사업

○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의 수립

-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 2월부터 안양시에서 구성한 AAC21 기획단과 AAC21 건축자문단 및 시의원과 관계자 등이 함께 선진 정책사례 등을 검토하여 2004년 2월 기본계획 수립
- AAC21 기본계획은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과 7개 상위 계획 및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 안양시건축문화상 제정

-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안양시건축문화상을 제정하여 매년 페스티벌 개최

○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

- 안양시 중심가 5개 구간을 선정하여 Art Street 조성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도로시설물 예술화 작업

□ 성과 및 한계

○ 공공디자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

- 단기간에 공공디자인 관련 조직을 설립하고 조례 등을 제정한 타 자치단체와 달리, 안양시는 2002년부터 안양시 도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면밀히 검토되어 수립된 AAC 21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집행 등으로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차단 가능

○ 도시디자인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형 조직 구성

-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도시 디자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AAC21 건축자문단, 예술도시기획단, 안양공공예술재단 등의 관련 주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 디자인의 특성이 최적인 도출임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와 사업시행 주체, 개발자 및 주민 등과의 연계 창구로 활용가능한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

○ 관련 규정과의 관계 정립의 어려움

- 수려한 경관과 미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목표로 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도 초기 구성 당시에는 현재의 3개팀에 도시경관팀을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그러나 아트시티를 구현하는데 자연환경과 도시미관까지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경관팀의 업무는 도시국 건축과 건축미관팀으로 이관하고 현재는 광고물, 공공 디자인 관련 업무를 위주로 한 도시 디자인 업무를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담당
- 현재 상호간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혼란을 야기하는 도시경관(미관), 공공 디자인 등을 기능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도시 디자인 관련 경험이 축적된 안양시의 사례는 이후 공공 디자인 관련 제도 기반 구축에 시사점을 주는 바가 많음

IV. 중앙부처의 추진실태

1. 법·제도

- 도시나 지역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공공 디자인의 촉진 및 도입의 법제도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
 - 그 동안의 양적 성장의 시기에서 공공 디자인 등 질적 성장과 관련된 사항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 공공 디자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고조의 계기는 2004년에 갱신하려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의 촌스러움에서 연유
- 현재 공공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적 토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디자인에 관련된 법률(디자인 보호법, 산업디자인 진흥법)은 사적(私的)이고 산업적 영역에 속하는 산업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에 관한 규정 정도가 존재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도시의 미관을 위해 1%의 예술작품을 설치하게 하는 정도의 규정이 존재
 - 건축법(건축선, setback 규제 등)과 경관관리법은 공공 및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디자인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공급하는 사적인 영역의 용도규제, 경관 등과 관련된 디자인을 규정
 - 건축기본법은 건축디자인(공공공간 포함), 조경, 국토환경 등에 대한 디자인 관련사항을 규정
 - 건축정책기본계획, 시도 단위의 광역건축기본계획, 시군구 단위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
 - 국무총리를 위원장³⁾으로 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3) 위원은 각부장관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30인이며,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 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자치단체나 공공 등이 공급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공공이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공공 디자인과 가장 근접한 법적기반을 제시하고 있음
- ※ 그러나 이 법률은 공공 디자인의 영역 가운데, 옥외광고물이라는 제한된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결국 직접적으로 공공 디자인을 규정한 법률적 기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공 디자인 관련 요소들을 개별법들이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임

표 14. 공공 디자인 관련 법률·제도

법률	목적	비고
디자인 보호법	-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創作을 獎勵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함	권리 보호
산업디자인 진흥법	- 産業디자인의 研究 및 開發을 촉진하고 産業디자인의 振興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産業의 競爭力 強化에 이바지함이 目的 - 지식경제부장관은 産業디자인의 開發促進과 振興을 위한 綜合적인 計劃, 産業디자인振興綜合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 ※ 산업디자인 : 製品등의 美적·機能적·經濟적 價値를 最適化함으로써 生産者 및 消費者의 物質적·心理적 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한 創作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製品디자인·包裝디자인·環境디자인·視覺디자인등을 포함(법 제2조)	산업 디자인 초점
문화예술 진흥법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공연, 전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함을 규정(제 9조) ※ 목적 :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부차적 언급
경관 관리법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포괄적 규정

	<p>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p> <p>※ 경관 :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제2조)</p>	
<p>건축 기본법</p>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이 목적</p> <p>- 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에 관련된 생활공간이 조성</p> <p>- 사회요구를 수용하고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 조성</p> <p>-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p> <p>-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p> <p>.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p> <p>.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통합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p> <p>. 건축 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p>	<p>공공공 간 건축디 자인포 함</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p>	<p>- 屋外廣告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目的</p> <p>※ 시도, 시군구의 단체장에게 허가, 신고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p> <p>※ 옥외광고물 :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交通施設 또는 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 포함)으로서 看板·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지칭</p>	<p>행안부 의 옥외광 고물발 전 종합계 획 수립</p>

2. 부처역할 및 조직

□ 부처역할

○ 새 정부 디자인 관련 국정과제 수행의 역할구분

-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구현”의 추진을 위해 총리실이 주관을 하며, 지경부, 문화부를 공동 주관기관으로 지정
- 여기에는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디자인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의

개편 및 정비 등을 포함

- 그러나 산업 및 패션을 포함하여 디자인 강국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며 공공디자인을 관장하는 추진체계는 부재
- 산업디자인과 공공 디자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추진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구분이 부재
-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도시, 건축) 디자인 정착”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표준모델 개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
- 행정안전부는 Street furniture로서 공공의 미관 및 디자인과 관련성이 높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노출되는 交通施設 또는 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을 관할하고 있음

□ 부처별 조직

- 행안부
 - 지역발전국 지역활성화과에서 옥외 광고물 등 공공디자인을 관장하고 있음
- 지경부
 - 성장동력실 디자인브랜드과 및 부처 유관조직의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산업디자인 관할
- 국토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도시정책관 도시규제정비팀(토지이용규제), 도시정책관 건축문화팀에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총괄,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건축 디자인 개선대책 등 건축문화 정책 개발 등 관할

○ 문화부

- 문화정책국 디자인 공간문화팀에서 법률적 기반을 보유하지 않은 채, 간판문화개선, 문화도시 공간환경조성 등 업무를 관할

표 15. 공공디자인 중앙부처 조직 및 기능

구 분	목 적	비 고
행안부	- 지역발전국 지역활성화과 - 옥외광고물, 도로 입간판 등 - 공공디자인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행정지원	행정관리 대상
지경부	- 성장동력실 디자인브랜드과 - 섬유산업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산업디자인 진흥에 초점	권리보호
문화부	- 문화정책국 디자인 공간문화과 - 간판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디자인기본법제정, 디자인정책기본계획수립	패션 등 산업디자인, 공공 디자인 비중을 두는 추세
국토부	- 도시정책관 도시규제정비팀: 토지이용규제 - 도시정책관 건축문화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책 총괄,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건축 디자인 개선대책 등 건축문화 정책 개발, 한옥진흥법 제정 추진 등	건축문화 차원의 접근

3. 부처별 입장

○ 행안부

- 인식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제대로 지원, 촉진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미비되어 있음

- 지향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및 통합적인 법률지원이 필요

○ 문화부

- 인식 : 공공디자인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정책수립으로 인해, 종합적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해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약화

- 지향 : 공적 영역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인 공공 디자인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006년 문화부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2006년 박찬숙 의원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발의 후 폐기

- 보류사유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1호바목) 및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의 중복, 상충문제
- . 디자인 정책추진체계의 단순화에 대한 디자인계의 요구
- . 법률안의 명칭을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 고려, 목적도 ‘공공디자인의 관리 및 진흥 등으로 명확화’ 필요
- . 지경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에서도 디자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로 예정함에 따른 중복설치 문제 발생

< 박찬숙 의원 발의안의 주요내용 >

- 문화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
-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 지경부

- 인식 : 산업디자인에 포함(법 제2조)되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가운데 환경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디자인을 규정
- 지향 : 환경 디자인에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 패션 및 산업 디자인 측면의 사적부문의 디자인에 대한 접근으로 공공 디자인 측면의 지원이 결여

※ 2007년 김태년 의원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발의 후 개정안 폐기

- 보류사유

- . 환경디자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되어 적절치 않으며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수정정의되어야 함
- . 공공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이 산업디자인에 공공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 김태년 의원의 개정안 주요내용 >

- 산업 디자인의 환경 디자인에 실내디자인, 건축 디자인 등 공공 디자인을 포함
-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 국토부

- 인식 : 국토기본법('07년 12월 제정)의 건축물 디자인 규정에 의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공간구조,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부속물, 경관)이 공공 디자인의 범위를 포함
- 지향 : 건축기본법이 공간디자인에 대한 통합 조정·관리의 틀을 이미 구축하고 시행 -> 기존법안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입법 추진은 중복입법의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정책혼선 및 부처간

갈등을 조장 ->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현행의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함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통합 건축디자인 기준마련, 건축디자인 등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표 16. 공공디자인 입법화에 대한 부처별 입장

구분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	국토부
입법	- 찬성	- 찬성	- 반대, 개정	- 반대
입장	- 통합적 공공 디자인 지원 필요 - 통합적 추진체 계구축	- 문화부장관 중 합계획수립 - 산업디자인대 비 낙후된 공공디자인 육성	- 산업디자인이 공공디자인포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 건축기본법이 공공 디자인 포함 - 입법화는 부처 간 갈등 야기

4. 문제점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

- 공공디자인은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계되어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련시설과 관련된 공공디자인은 행안부,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은 국토부 등에서 관할
-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일부 공공 디자인은 지경부가 관계되고 있으며, 문화 및 예술시설과 관련된 공공 디자인은 문화부가 관계하고 있음
- 메이저 4개 부처 외의 타 부처도 일정부분씩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에 관계하고 있음

- 또 부처간에도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도 미적·문화적 관점, 건축 등 환경적 접근, 공공재의 행정규제적 접근 등 시각에 있어 일정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공공 디자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재

-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디자인 정책시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디자인 관련 기본법 부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기본법, 경관법, 산업디자인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법률에 공공 디자인 요소가 일부씩 산재(散在)하고 있는 형편
-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형편임

○ 통합적 추진체계의 정비 부족

- 100대 국정과제 중 디자인 강국 실현이라는 총괄적 목표수행을 위한 부처지정만 있을 뿐이지 추진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함
- 공공 디자인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목적 보다는 디자인 전체에 대한 한시적인 추진체계 수준임
- 또 부처간에도 공공 디자인에 대한 미적 접근, 행정 및 공공 서비스 공급의 규제 측면 등 접근의 시각에 있어 편차가 존재
- 따라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통합, 연계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입간판, 옥외광고물 등 행정제도 지원적 측면의 접근이 부재한 한계를 보임

V. 외국의 공공디자인 추진실태

1. 추진실태⁴⁾

○ 영국

-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개념상 이와 근접한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용어를 사용⁵⁾
- 2000년대 초반 도시디자인 정책개발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
- 출발점은 부수상 존 프레스코와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주도한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와 2000년 케이브(KABE)가 수립한 ‘디자인에 의하여’임
- 도시 디자인 추구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 및 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할 공공부문 선정

① 거리, ② 근린, ③ 지역(구), ④ 스카이라인, ⑤ 가로경관, ⑥ 거리가구, ⑦ 횡단보도, ⑧ 산책로, ⑨ 공원과 정원, ⑩ 주요건물, ⑪ 공공건물, ⑫ 강과운하, ⑬ 지하철과 기차역, ⑭ 교통시스템 및 교차로

- 중앙부처 협력의 지원: 문화부(좋은 공공건물, 미래의 유산), 상무부(공공건물의 디자인 기준향상), 전문가(좋은 디자인의 가치)

○ 일본

-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요코하마의 공공디자인 사례를 통해 일본의 정책의 개관
- 요코하마는 동경의 베드타운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를 시작

4) 모든 나라의 추진실태를 분석한다는 것은 지면 등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하고, 여기서는 유럽의 대표적인 지역과 일본 등의 나라에 대해 검토한다.

5) 이 점은 유럽 전체에서 마찬가지라고 한다(김정후, 2008, 109)

- 도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을 1971년 설치, 현재는 도시디자인실로 성장
-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 도심부 및 정비, 항구뉴타운, 교량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도시디자인팀이 수행
- 옥외광고물, 보행자 공간 및 광장공간의 디자인 향상 등 지역의 디자인에 도로담당부서, 가로수 담당, 설계인허가 등 관련부서의 긴밀한 공조 및 연계
- 국가 차원에서 도시 디자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관법을 제정하여 통합적 디자인을 지원(민간 등 주체의 법적 구속력 제공)
- 자치단체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에 의한 창의적 유도 시스템 등을 수립하여 도시 디자인을 추진

2. 정책적 시사점

○ 공공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추진

- 공공디자인은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주체(부처)가 참여하여 대상물이나 공간에 대한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있음
- 관련 중앙부처의 통합적 지원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부서의 통합, 연계적 추진에 의해 지역의 공공 디자인을 촉진하고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음

그림 6.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추진 (예시)



- 중앙의 통합적 지원과 자치단체 주도의 공공디자인 시행
 -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에 의한 지원체계 구축
 - 관련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
 - 중앙의 지원,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기반한 자율적 공공디자인의 시행 및 추진

표 15.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공디자인 정책비교

공공디자인 선진국(특징)	국내
 <p>How many, How much, Wie viel</p>	<p>급속한 양적 성장정책 (새마을운동 등)</p>
<p>주무부처의 명확성과 중앙의 철저한 통합관리 (통합적 정체성 확립)</p>	<p>각기 다른 주무부처의 혼재성에 따른 혼란과 통합적 관리 불가</p>
<p>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기적 행정시스템 구축</p> <p>예) 파리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 위원단, 쾰스부르크 시장 직속의 공공디자인 위원단, 독일 NRW 주정 부의 도시 디자인 통합기획단 등</p>	<p>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업무 단절</p> <p>예) 광고물관리, 건축 및 토목, 교통, 중소기업지원, 조경 및 경관조명등이 제각각 분리운영 -서울시사례 : 2000년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으나 수평적 관계에 따른 업무 추진성의 결여</p>
<p>적극적인 전문직 공무원 제도 운영</p>	<p>찾은 이동으로 인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p>
<p>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및 관련법</p>	<p>관련법의 부재로 행정적 지원근거 미비</p>

VI.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1. 추진방향

○ 자치단체의 주도적 추진

-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개성있는 지역 주도의 공공디자인 추진
- 개성과 조화를 충족시키는 방향
-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중앙은 최대한 지원

○ 통합적 공공디자인 지원

- 중앙부처간의 영역다툼을 벗어나 중앙은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수요와 활동지원
- 부처별 단편적, 분절적, 산발적 지원 대신 통합적 공공디자인 지원
- 지역수요 반영, 지역 애로 지원에 초점

○ 단계적 방식의 추진

- 우리나라에서 공공디자인이 부각된 이유는 도시나 지역공간을 점유한 시설 및 건물, 혹은 이들의 재료, 조화, 형태, 색, 역할 등이 전문가는 물론이고 대중의 무관심 속에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증가
- 공공과 연관된 시설 및 건물, 공간의 미학적, 기능적 가치와 중요성 인식을 시작
- ※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유럽 등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 속함
- 보다 포괄적인 공공디자인의 범주 보다는 한정된 범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이 고조된 점에 비추어 단계적 접근
- 부처간 영역다툼의 첨예화를 감안하여 공감대와 이해제고 후 통합디자인으로 이행

○ 자치단체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성공지역을 창출
-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벤치마킹을 위해 성공적인 사례를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 및 전파

2. 추진시책

□ 단계적 통합 디자인 영역의 형성

○ 필요성 및 목적

- 부처는 제한된 부분의 공공디자인을 관할
-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협력, 연계, 통합적 공공디자인 추진, 지원에 한계
- 이해가 일치하는 제한된 공공디자인 영역을 형성
- 신뢰, 이해의 제고를 통한 영역 확대
- 궁극적으로는 통합 디자인 추진 및 지원으로 발전

○ 추진방식 및 내용

- 공공디자인 추진내용을 비교적 좁은 영역→ 보다 넓은 영역으로의 단계적 방식을 채택
- 1 단계 : 우선영역 형성
 - . 공공에 의한 공급, 공익 창출 등 가장 좁은 범위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의 우선영역 창출
 - 예) 가로등, 육교 등의 공공시설물, 길, 공원, 시장 등의 공공공간,

도서관, 관공서, 박물관 등의 공공건물

- 2 단계 : 확대영역 형성

- . 1단계 영역에 대한 협력의 공유를 통해 옥외광고물, 공공건축물, 문화시설물, 도시환경, 산업시설 등으로 통합적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확장

표 17. 통합 디자인 영역의 단계

구 분	1 단계	2 단계
영 역	- 비교적 제한된 범위 - 우선 영역 형성	- 보다 넓은 범위 - 통합적 영역형성
내 용	- 공동의 부처가 관계하는 공공시설, 공공공간, 공공건물	- 옥외광고물, 공공건축물, 문화시설, 조경 및 경관, 공공 산업시설 등

○ 부처의 공동채널 형성

- 부처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 . 순번제에 따라 정기화된 부처간 협력을 주관
 - . 정기모임 시 협력에 의한 공공디자인 지원내용 및 방식 논의
- 통합적 공공디자인과 연계한 기구형성
 - . 초기는 부처 실무 과장급 정도의 협의
 - . 나중에는 공공 디자인 공동지원단 급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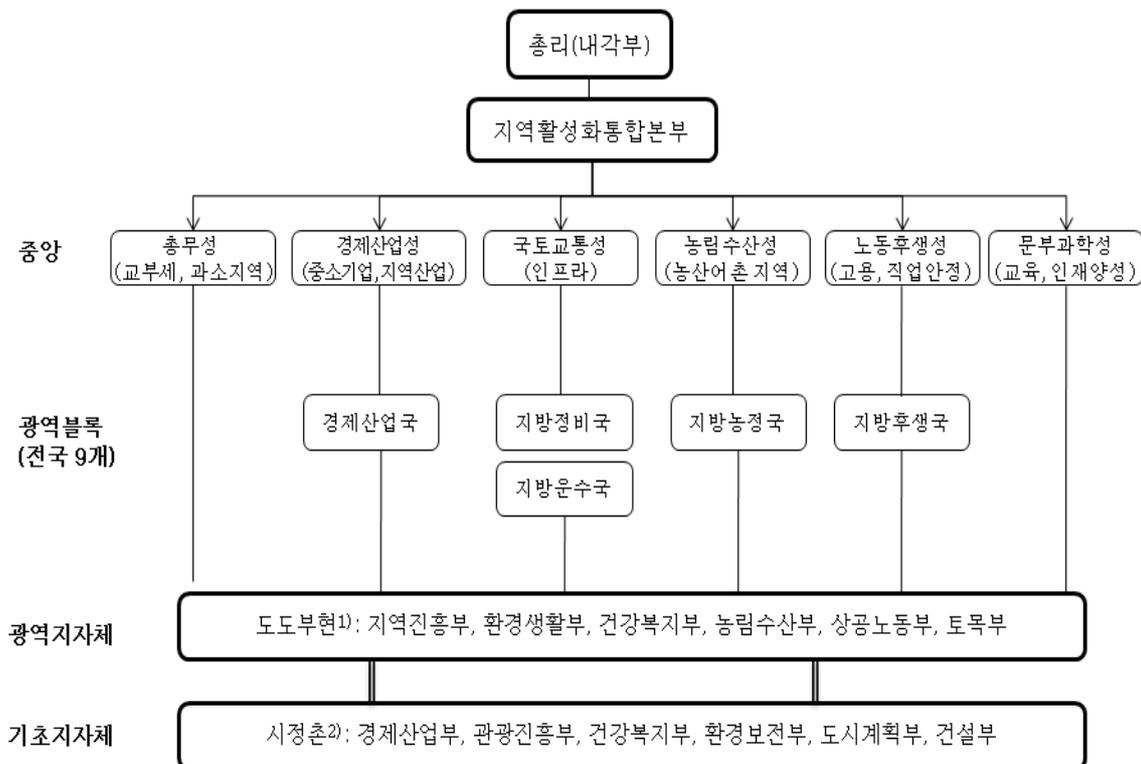
□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다양한 부문 및 기능의 통합성에 의해 공공디자인이 추진
- 부처간의 영역다툼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촉진 및 향상을 저해
- 부처의 다양한 기능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공공디자인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참고 : 다양한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지역활성화에 대한 일본의 사례
 . 다수의 중앙부처 공동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 통합본부를 설치, 운영

그림 7. 일본의 지역정책 관련 중앙 및 지방의 통합추진체계



○ 중앙단위 추진체계

- 부처 통합의 공공디자인 추진체계 형성
- 단계적으로 중앙단위 추진체계를 형성
- 1단계 : 우선영역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추진체계를 형성
- 2단계 : 본격적으로 부처의 협력에 의한 통합적 공공디자인 추진체계를 형성

△ 공공디자인 위원회

-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 당연직 위원(부처장관)과 위촉위원(전문가)으로 구성
- . 공공디자인 총괄 기획, 조정

△ 서무부처

- . 공공디자인 실무집행
- . 서무부처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지원단' 설치, 운영
- .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지원

△ 중앙부처

- . 소관 공공디자인 지원

○ 자치단체 단위 추진체계

-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연계, 통합을 통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기획실, 도시 관련 부서, 문화관련 부서, 교통관련 부서 등에서 분산적으로 추진

△ 시·도

- . 공공디자인 총괄부서 설치 및 운용

△ 시·군·구

- . 공공디자인 관련 전담부서 설치, 운영
 - ※ 필요시 기획실, 도시정비, 건축, 교통, 문화 등 관련부서의 연계적 추진체계 형성 및 운영
- . 공공디자인 촉진 및 향상을 위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 제정
- .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 공공디자인 자문조직 설치, 운영

□ 재정지원

○ 필요성

-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촉진을 유도
-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단체를 지원
- 민간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디자인 재원편성

- 재원지원은 복수의 대안이 가능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안

-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공공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편성
- . 지역개발계정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지원
- . 중앙이 제시하는 포괄보조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용

△ 일반회계 편성안

-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에 공공디자인 지원을 편성
- .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재원의 독자성 확보

. 공공디자인 관련부서의 재원지원

⇒ 현실적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에 재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바람직

□ 통합법 제정

○ 1안 : 옥외광고물 관련 법 확대 개정

△ 환경여건

- 국토부(입법화 불필요), 지경·문화부(부처주도 입법화) 등 입법화에 대한 이해관계의 격차 존재
- 부처간 이해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통합지원법의 입법화가 수월치 않음을 고려

△ 추진방식

-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 공공디자인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의 확대개정
- 옥외 광고물 관련 법률을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적 성격을 전환하여 개정
- 종래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보다 포괄하는 범위를 확대

△ 법안의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지원대상, 범위, 내용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지원방안 등

○ 2안 : 공공디자인 통합법 제정

△ 환경여건

-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추진은 궁극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종합성을 고려한 통합법 제정으로 지원 실효성 담보

△ 추진방식

- 소관부처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파악
- 행안부, 국토부, 지경부, 문화부 등 공공디자인 관련부처의 공동입법 발의 형식을 채택
- 공동입법을 발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Task Force 설치

△ 법안의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의 대상, 범위, 내용
-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 공공디자인 통합적 추진체계, 역할분담
- 공공디자인 위원회
-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지원방안 등